



제336회 정례회
2014. 12. 10.(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며,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하고(12억원, 2011.11월),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13년말 조성액 46백만원)하며, 지방채의 상환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에 따라 폐지조례안이 상정됨.

- 본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임. 따라서 기금 운용 성과 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 기금의 운용 성과 측면에서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하고, 매년 적립금액 또한 미미하며, 지방채의 상환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기금의 폐지사유에도 부합하는 바,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2014. 10.21~23일까지)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서면심의·의결을 통해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